

[별표 4]

시료 수거 및 송부요령(제21조제4항 관련)

1. 시료수거 준비

가. 시료수거 용기는 시료의 수거·수송·운반에 편리하고, 운반 중에 건조·흡습·오염·변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·형상·분석대상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.

나. 시료수거 봉투,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.

2. 시료 수거

가. 시료는 분석항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품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.

나. 시료가 캔, 병, 상자 등 용기·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식품 등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수거(최소 포장 단위)하며, 대형 용기·포장에 넣은 식품 등은 시료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거한다.

다. 시료는 샘플링 방식으로 6곳 이상에서 무작위로 발취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수거한다.

- 1) 자체보관용 시료 1점과 분석용 시료 1점 이상을 수거한다.
- 2) 기타 시료단위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.

라. 분석 중 최종확인 등을 위해 시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.

마. 식품 종류별 시료(분석용) 수거량

식품의 종류	수거량	분석 항목별 수량
장류(고추장, 된장, 간장 등)	500g 이상	이화학 검사용 1점
김치, 고춧가루, 미숫가루, 매실농축액, 두부, 시래기, 죽발 등	300g×2 이상	고형량 또는 대장균(군)·세균수 검사용 1점, 이화학 검사용 1점
묵류, 찹쌀, 대추차 등	300g×3 이상	고형량 검사용 1점, 대장균(군)·세균수 검사용 1점, 이화학 검사용 1점
식혜, 도라지가공품 등	300g×4 이상	세균발육시험 검사용 3점, 이화학 검사용 1점
한과 등 기타(홍삼농축액 제품 등 고가 시료의 경우)	300g 이상 (100g 이상)	-

3. 시료수거확인서 작성

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1부(원본)는 보관하여야 한다.

4. 시료 수거 시 주의사항

- 가. 수거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, 수거지, 수거일, 수거자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, 수거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- 나.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제품을 시료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거하여야 한다.
- 다. 증발 또는 흡습 등에 의한 수분 함량 변화와 빛 또는 온도 등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는 빛이 차단되는 밀폐 용기에 넣고 수거 용기내의 공간 체적과 가능한 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5. 시료의 송부

- 가. 조사원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분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나. 수거한 시료 송부운반 시에는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.
- 다.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가능한 멸균용기에 당해 식품의 냉장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체 없이 분석하거나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라. 수거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여 2차오염이나 변질, 부패,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수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.

6. 분석결과의 통보

- 가.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성분조사 결과를 조사원(분석 의뢰기관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. 다만,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일을 따로 정하여 분석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나. 조사원은 분석기관으로부터 성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의2호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